

#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 조례안심사보고서

1995. 3.  
행정재무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5년 1월 4일 구청장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5년 1월 21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31회 영등포구의회(임시회)제1차 위원회(1995년 3월 14일) 상정의결

#### 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설명자 : 총무국장 윤정중)

##### 가. 제안이유

○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직제규칙과 사무분장규칙이 각각 폐지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조직규칙으로 제정됨에 따라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의 비치와 관수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

##### 나. 주요골자

- 동장의 공인관수자를
  -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
  -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

#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

(전문위원 조대현)

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'94. 11. 1자로 서울특별시동사무소 직제가 사무장, 서무주임, 민원주임직제에서 시민생활계와 민원봉사계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동장의 공인관수자를 1992. 3. 6 제정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인조례 제3조(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) 제4항을 개정된 직제에 맞추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당연히 벌써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이므로 특별한 의견 없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개정을 요함.

#### 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#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3조(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)	①~③생략 ④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 관수한다.	제3조(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)	①~③현행과 같음 ④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,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 관수한다.	

#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 조례(안)

의안  
번호 294

제출년월일 : 1994. 12.  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## 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직제규칙과 사무분장규칙이 각각 폐지되고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조직규칙으로 제정됨에 따라 동장의 공인중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의 비치와 관수자를 지정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.

#### 2. 주요골자

- 가. 동장의 공인관수자를
  - 일반사무용은 사무장에서 시민생활계장으로
  -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에서 민원봉사계장으로

#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동사무소조직규칙(규칙제191호)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없음.
- 다. 기 타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제 호

#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개정 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) 제4항중 "일반사무용은 사무장이, 민원사무용은 민원주임이"를 "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, 민원사무용은 민원봉사계장이"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